

『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종호 의원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구미시 구포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구포매립장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향지역 주민단체에 우선적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(안 제8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부서의견 : 해당없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구포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구미시 구포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,
-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매립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